

대구지방법원 2023. 3. 28 선고 2022가단1291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, 담당변호사 구본덕, 권민지

피 고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현, 담당변호사 한석영

변 론 종 결 2023. 3. 7.

판 결 선 고 2023. 3. 28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소외 D지역주택조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1. 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소외 D지역주택조합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. 11. 5. 접수 제1529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, 별지 목록 제6, 7,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. 7. 30. 접수 제1139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판단

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, 자신들이 소외 D지역주택조합(이하 ‘이 사건 조합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금전채권(원고 A: 72,619,400원, 원고 B: 77,557,200원)을 보유하고 있고, 이 사건 조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위 금전채권 전부를 변제받았음을 자인(2023. 3. 7.자 변론조서)하고 있으므로,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,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(원고들의 사해행위성립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가 규정한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, 위 원칙에 따라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).

판사 박상인

별지